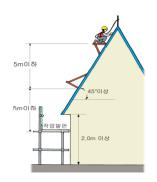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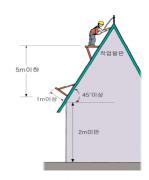
C - 59 - 2022





(가) 지붕하단 높이 2.0 m 이상 경우 (나) 지붕하단 높이 2.0 m 미만 경우 <그림 7> 지붕보호벽 설치방법

- (나) 지붕보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다) 지붕보호벽의 버팀장치는 충분한 지지능력이 있는 중도리(Purlin) 등에 수직으로 관통하여 고정시켜야 한다.
- (라) 지붕보호벽은 상부 작업발판의 좌·우 양측으로 최소 2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마) 지붕보호벽은 최소 1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바) 그물모양의 지붕보호벽을 설치할 경우 그물코의 넓이는 100 mm 이내 이어야 한다.

6.3 파손되기 쉬운 지붕

(1) "파손되기 쉬운 지붕"이라 함은 작업자가 지붕 위로 이동 또는 작업 중 깨질 수 있는 함석, 슬레이트, 채광창(철망유리, 채광용 주름 플라스틱판, 지붕유리창 등), 강화 절연판 등의 재질로 된 지붕을 말하는데 노후된 공장지붕, 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.